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등록대상자에게 진위 확인 조치에 응할 의무 부여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8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 제도와 개선 논의	4
3. 등록대상자에게 진위 확인 조치에 응할 의무 부여 등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경찰의 점검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수인의무의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⑥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 ----- ----- ----- ----- ----- -----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② (생략)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

현행	개정안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7항 후단에 따른 <u>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u>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

2. 현행 제도와 개선 논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 절차상의 특례, 주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¹⁾

○ 성폭력처벌법은 총 4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장(제42조~제49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1~\$2)	총 칙	성폭력처벌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장 (\$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개별적인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상의 특례 등
제3장 (\$42~\$49-2)	신상정보 등록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정보의 제출·변경, 등록정보의 관리 등
제4장 (\$50~\$52)	벌 칙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등록대상자와 신상정보 등 등록·관리 절차

□ 2025년 현재 성범죄로 판결 등이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음.

○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록의 절차와 등록정보의 관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게 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관련 주요 규율 >

구 분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 한편, 범죄를 원인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 신상공개법”)도 있는데, 동 법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2)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경우 그 대상 범죄가 성범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도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과 차이가 있음.

-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강간·추행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그 밖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임(제42조제1항).³⁾

<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구 분		범죄 유형
성폭력처벌법	§2①iii·iv 및 §2②	강간·추행
	§3~§11, §14 및 §15	강간·추행,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2ii 가목 및 라목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

- 현행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해당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82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1항제3호’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성폭력처벌법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따라서 추후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심사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의무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등록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함. 또한,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된 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말까지 관할경찰관서 등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협조하여야 함(제43조).⁴⁾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사진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사진자료

4)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등의 정보(이하 “등록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함(제43조제5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⁵⁾

한편, 법무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회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⁶⁾

5)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6) **성폭력처벌법**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 및 등록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일정한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제45조제7항·제8항).⁷⁾

-
- 7)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

다.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개선 논의

□ 2000년 「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에 따라 현재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시간이 지나 성범죄가 누적되면서, 그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가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1만 3,628건 수준이던 신상정보 등록건수는 2023년 12만 6,789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신상정보 등록건수(2013-2023) >

(단위: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
등록 건수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6	116,434	126,789	24.99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법무부, 2023 법무연감 (2024).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그 등록정보가 증가하게 되면서,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경찰 관서의 장이 일정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의 진위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제7항·제8항), 등록대상자가 진위 확인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달리 신상정보의 최초 제출 거부, 변경된 정보의 제출 거부 및 사진 촬영 거부 등에 대하여는 형벌이 부과됨(제50조제3항).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이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자에게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하는 등록정보 진위 확인 조치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제21대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제2118566호)이 발의된 바 있음.

- 제2118566호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5월 16일 상정되었다가 2024년 5월 29일 제21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가.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⑥ (생략)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3. (생략) ⑧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u>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u> 응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② (생략)	제5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7항 후단에 따른 <u>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5헌가30 결정.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 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 다만, 현행법은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 등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는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할경찰관서 출석·사진 촬영 협조 의무(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무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정보 조회 등 요청(제44조제3항·제4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조치(제45조제7항)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공 의무, 출석·사진 촬영 협조 의무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음(제50조제3항).

제50조제3항은 등록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등록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에 따른 제재대상은 최초의 신상정보 제공 및 사진촬영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제1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제2호) 또는 매년 연도말에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등임.

< 등록정보의 정확성·최신성 담보를 위한 제재 >

구 분	위반행위	제 재
최초 신상정보 제공 또는 사진 촬영(§43①·②)	불응, 거짓 제공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0③)
변경된 신상정보 제공(§43③)	불응, 거짓 제공	
매년 관할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 촬영(§43④)	불응	

-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하는 진위 여부 확인 등 조치는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일정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공 의무 등과 유사한 면이 있음.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등록대상자가 제47조제5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벌칙이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그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경찰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증가로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등록대상자가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등록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